

1. 제안이유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개발 관련 신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016호, 2022. 12. 6.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신청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안 제10조의2 신설)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와 신청기술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기관은 별지서식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영 제19조의11제5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8호의6서식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u> <u>② 영 제19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u> <u>③ 영 제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u> <u>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u>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영 제19조의11제5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
8호의6서식과 같다.

신기술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실명확인	처리기간	120일
신기술 명칭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기술 유형	위성	☐ 구조계 ☐ 열제어계 ☐ 궤도 및 자세제어계 ☐ 추진계 ☐ 전력계 ☐ 원격측정명령계 ☐ 광학탐재체 ☐ 전파탐재체 ☐ 항법탐재체 ☐ 광대역통신방송 탐재체 ☐ 개인휴대통신 탐재체 ☐ 과학시험탐재체 ☐ 탐재 소프트웨어 ☐ 기타()		
	발사체	☐ 추진제공급시스템 ☐ 제어계 ☐ 구조계 ☐ 전자계 ☐ 열제어 및 공력설계 ☐ 메인엔진 ☐ 상단엔진 ☐ 고체모터 ☐ 기타()		
	우주관측탐사	☐ 원격탐사 및 우주환경 관측 ☐ 표면현장 탐사 ☐ 우주통신 ☐ 우주감시 ☐ 샘플회수 및 지구 재진입 ☐ 궤도상 서비스 ☐ 기타()		
	기타	※ 해당사항이 없는경우		
신기술 내용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업무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전송(Fax)	전자우편	

「우주개발진흥법 진흥법」 제18조의7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1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신기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다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보완요청) 관보공고	→	의견조회 및 전문기관 심사	→	신기술 등록 및 지정	→	통보 및 사후관리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처리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처리기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신청기술 설명서

(제 1 쪽)

1. 신청기술 핵심내용(기술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포함하며,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가. 핵심 요소기술 주요내용 및 특징

1) 개발기술의 사진 또는 개략도, 구성도

2) 주요기능

3) 성능

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다. 첨단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국내로의 수입규제 관련여부

라. 관련산업 파급효과(국내외 시장규모 포함)

2. 기술개발 방법 등					
가. 기술개발 기간		년 월 ~		년 월	
나. 기술개발 방법(복수응답 가능)					
	☐ 자체(단독)개발				
	☐ 공동개발	(참여기관명)			
	☐ 위탁개발	(수탁기관명)			
	☐ 기술이전	(이전기관명)			
다. 기술개발 참여 연구자					
	소속기관(업체)명	직위	성명	참여분야	비 고
라.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방법별 담당부서 및 개발내용(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마. 기술이전의 경우 그 내용과 개발기술과의 관계(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3. 신청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현황(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구분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일자 (등록일자)	출원명칭 (등록명칭)	권리권자

나. 신청기술이 타인의 산업재산권과 분쟁 중인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

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합성평가 현황(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다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분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작성 및 인증서·시험성적서 첨부)

시험일자 (인증일자)	시험기관 (인증기관)	시험내용 (인증내용)	시험결과 (인증결과)

4. 국내외 유사·경쟁 기술과의 특징 비교(해당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비교항목 ※ 정량적 비교가 가능한 항목으로 5개 내외 비교	자사 신청기술 (기술명:)	국내 유사·경쟁기술 (기술명:)	해외 유사·경쟁기술 (기술명:)
기술개발완료시기	년 월	년 월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년 월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판매개시 예정일	년 월	년 월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년 월 (자료가 있는 경우 작성)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1. 명칭:

2. 개발자(개발자):

3. 기술 내용:

4. 기술 범위: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1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